

『국가전략』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

제정 2009. 6. 15
개정 2019. 12. 16

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며, 검증 및 판단을 담당할 편집위원회 산하 연구 및 출판 윤리소위원회(이하 윤리소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고자의 의무) 『국가전략』의 투고자는 연구 및 출판 활동에 있어 학자의 양심과 윤리를 지키며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개정 '19.12.16>

제3조(편집위원회의 의무) 『국가전략』 발간 시 투고된 논문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19.12.16>

제2장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관한 규정

제4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전략』에 게재 및 게재신청 논문의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그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의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유형)

1.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는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자신의 연구물의 일부나 전부를 적절한 명기 없이 재사용하는 행위는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6.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기타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기준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윤리규정에 준한다.

제6조(심사주체)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편집위원회 산하 윤리소위가 담당한다.

제7조(절차)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과 제재 절차는 ‘연구 및 출판 윤리소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장 연구 및 출판 윤리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목적) 연구 및 출판 윤리소위원회의 운영규정은 『국가전략』의 투고자가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윤리소위의 구성)

1. 연구 및 출판 윤리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소위를 편집위원회 산하에 설치하여 운영한다.
2. 윤리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3. 윤리소위 위원은 편집위원 가운데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4. 윤리소위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의 판정 절차)

1.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외부의 제보나 심사자의 문제제기 등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윤리소위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
2. 윤리소위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여부는 윤리소위의 합의에 의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윤리소위 위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1조(제재)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혹은 복수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1. 『국가전략』에 3년 이하의 투고 금지
2. 세종연구소 홈페이지에 부정행위 사실 공시 및 홈페이지에서 해당 논문의 삭제
3. 부정행위 확정 후 발간되는 첫 『국가전략』에 부정행위 및 개재취소 사실 공시

제12조(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1. 연구 및 출판윤리규정 위반으로 윤리소위에 제소된 자는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연구 및 출판윤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논문의 집필자가 윤리소위의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통보 7일 이내에 새로운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재심위원회의 구성과 결의요건은 윤리소위의 운영규정에 준하며 재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4. 논문집필자는 재심위원회에 소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5. 윤리소위는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당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윤리소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윤리소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절차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